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전 원 표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련사업 추진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련사업 추진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기 시행중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상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관련사업 추진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증진사업 협력 등 도지사와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복지센터, 지역 의료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8.18. ~ '21. 8.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 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문을 구체화하여 소방업무에 전념하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은 물론 충청북도민에게 원활한 소방서비스 향상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아가 기 시행중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더하여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